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5,457,700	13,363,731
일반회계	401,313,417	12,039,403
특별회계	44,144,283	1,324,328
공기업특별회계	28,281,556	848,44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570,761	587,12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710,795	261,324
기타특별회계	15,862,727	475,882
주택사업특별회계	407,036	12,211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61,000	10,83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12,531	54,376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907,461	27,224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49,424	16,48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86,419	11,593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5,113,262	153,398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430,000	72,9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390,760	71,723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342,887	40,28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61,947	4,858

제 2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69,70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 제47조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자산및물품취득비 5.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